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3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9.

발 의 자 : 서삼석 · 박용갑 · 이성운
김원이 · 박수현 · 윤준병
박지원 · 이개호 · 김영진
김영배 · 전종덕 · 조인철
서미화 · 문금주 의원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 증진,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·조정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 심의함.

그러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중 통신 및 보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빠져 있음. 이로 인한 통신 및 보험 일부 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의 주무 부처는 농어촌 지역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정부조직법 개정(제21065호, ‘25.10.1. 공포, ’26.1.2. 시행)에 따

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업무가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 등 민간기업의 이행사항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,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10조).

법률 제 호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25명”을 “2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국무조정실장관”를 “국무조정실장·기획예산처장관·금융위원회위원장·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) ① · ② (생략)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<u>25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 1. 재정경제부장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교육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농림축산식품부장관·산업통상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성평등가족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중소벤처기업부장관· <u>국무조정실장</u>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	제10조(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 <u>28명</u> ----- -----. ④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무조정실장</u> · <u>기획예산처장관</u> · <u>금융위원회위원장</u> · <u>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</u> 과----- -----
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⑤ ~ ⑨ (생 략)	⑤ ~ ⑨ (현행과 같음)